

(붙임2)

**「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b>제4조(지원대상)</b> ①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(이하 “지원대상업체”라 한다)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창업기업</li> <li>2. 벤처기업</li> <li>3. 혁신기업</li> <li>4. 녹색기업</li> <li>5. 연구개발 우수기업</li> <li>6. 추천기업</li> <li>7.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</li> <li>8. 전입기업</li> <li>9. 수출관련기업</li> <li>10. 소재·부품 생산기업</li> <li>11. 농림수산업 관련기업</li> <li>12. 명절·재해 자금 등</li> <li>13.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</li> <li>14. 기타 지원기업</li> <li>15. 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</li> </ol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4조(지원대상)</b> ①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(이하 “지원대상업체”라 한다)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창업기업</li> <li>2. 벤처기업</li> <li>3. 혁신기업</li> <li>4. 녹색기업</li> </ol> <p>&lt;삭제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. 추천기업</li> <li>6.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</li> </ol> <p>&lt;삭제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8. 소재·부품 생산기업</li> <li>9. 농림수산업 관련기업</li> <li>10. 명절·재해 자금 등</li> <li>11.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</li> <li>12. 기타 지원기업</li> <li>13. 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</li> </ol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- 지원대상 조정</p>
<p><b>제5조(전략지원부문)</b> ① 제4조 제1항 제2호, 제7호, 제10호, 제11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울산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.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<b>제5조(전략지원부문)</b> ① 제4조제1항제2호, 제6호, 제7호, 제8호, 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울산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.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- 제4조의 지원대상 조정에 따른 호 번호 조정 및 전입기업 추가</p>
<p><b>제6조(특별지원부문)</b> ① 제4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를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<b>제6조(특별지원부문)</b> 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- 호 번호 조정 및 지원범위를 울산 지역 내로 조정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<b>제10조(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 ~ 3. (생략)</p> <p>4. 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(이차보전대출 포함)</p> <p>5 ~ 7. (생략)</p>	<p><b>제10조(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(이차보전대출 제외)</p> <p>5 ~ 7. (현행과 같음)</p>	<p>- 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대출금은 지원대상에 포함</p>
<p><b>제11조(자료제출)</b> ① 금융기관이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한국은행 울산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&lt;별지 제1호 서식&gt;</p> <p>2.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&lt;별지 제2호 서식&gt;</p> <p>3.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 &lt;별지 제3호 서식&gt;</p> <p>4.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&lt;별지 제4호 서식&gt;</p> <p>5. <u>창업중소기업 확인서</u> &lt;별지 제5호 서식&gt;</p> <p>6.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 &lt;별지 제6호 서식&gt;</p> <p>7. <u>울산광역시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확인서</u> &lt;별지 제7호 서식&gt;</p> <p>8. 전입기업 확인서 &lt;별지 제8호 서식&gt;</p> <p>9. <u>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확인서</u> &lt;별지 제9호 서식&gt;</p> <p>10. <u>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확인서</u> &lt;별지 제10호 서식&gt;</p> <p>11. <u>특별지원한도 대출취급계획 보고서</u> &lt;별지 제11호 서식&gt;</p> <p>12.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11조(자료제출)</b> ① 금융기관이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한국은행 울산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&lt;별지 제1호 서식&gt;</p> <p>2.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&lt;별지 제2호 서식&gt;</p> <p>3.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 &lt;별지 제3호 서식&gt;</p> <p>4.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&lt;별지 제4호 서식&gt;</p> <p>5. <u>창업기업 확인서</u> &lt;별지 제5호 서식&gt;</p> <p>6.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 &lt;별지 제6호 서식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7. 전입기업 확인서 &lt;별지 제7호 서식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8.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</p> <p>② (생략)</p>	<p>- &lt;별지&gt; 서식 삭제 및 호 조정</p>
<p><u>&lt; 신 설 &gt;</u></p>	<p><u>부 칙 &lt;2020. 12. 30.&gt;</u></p> <p>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기준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21년 4월 첫 영업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경과조치)</b>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</p>	<p>- 부칙 신설</p> <p>- 시행일 명시</p> <p>- 경과조치 마련</p>

현행	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
<p>&lt;별표1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</u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전산코드</th> <th>지원부문</th> <th>선정기준<sup>1)</sup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1</td> <td>창업기업</td> <td>-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고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조업체(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&lt;별지 제5호 서식&gt;한 경우)</td> </tr> <tr> <td>A2</td> <td>벤처기업</td> <td>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 확인 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</td> </tr> <tr> <td>A3</td> <td>혁신기업</td> <td>- 지식경제부고시(고시2002-24호, 2002.3.1) 첨단기술 해당업체 - 국가기술표준원의 신기술(NET) 및 신제품(NEP) 인증기업  - 특허보유(실용신안권, 의장권 포함)업체 &lt;신설&gt;  &lt;신설&gt;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</sup>	A1	창업기업	-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고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조업체(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<별지 제5호 서식>한 경우)	A2	벤처기업	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 확인 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	A3	혁신기업	- 지식경제부고시(고시2002-24호, 2002.3.1) 첨단기술 해당업체 - 국가기술표준원의 신기술(NET) 및 신제품(NEP) 인증기업  - 특허보유(실용신안권, 의장권 포함)업체 <신설>  <신설>	<p>&lt;별표1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</u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전산코드</th> <th>지원부문</th> <th>선정기준<sup>1)</sup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1</td> <td>창업기업</td> <td>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고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조업체(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&lt;별지 제5호 서식&gt;한 경우)</td> </tr> <tr> <td>A2</td> <td>벤처기업</td> <td>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의3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'벤처기업확인서'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제조업체</td> </tr> <tr> <td>A3</td> <td>혁신기업</td> <td>&lt;삭제&gt;  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'신기술 인증'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'신기술인증서'를 제출한 기업  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른 '신제품 인증'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'신제품인증서'를 제출한 기업  - 「특허법」 제86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'특허증'  - 「실용신안법」 제20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'실용신안등록증'  - 「디자인보호법」 제89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'디자인등록증'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</sup>	A1	창업기업	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고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조업체(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<별지 제5호 서식>한 경우)	A2	벤처기업	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의3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'벤처기업확인서'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제조업체	A3	혁신기업	<삭제>  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'신기술 인증'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'신기술인증서'를 제출한 기업  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른 '신제품 인증'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'신제품인증서'를 제출한 기업  - 「특허법」 제86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'특허증'  - 「실용신안법」 제20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'실용신안등록증'  - 「디자인보호법」 제89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'디자인등록증'	<p>- 용어 정비</p> <p>- 제출서류 명시 및 지원범위 조정</p> <p>- 지원대상 축소 및 근거법에 따른 제출서류 명시</p>
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</sup>																									
A1	창업기업	-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고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조업체(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<별지 제5호 서식>한 경우)																									
A2	벤처기업	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 확인 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
A3	혁신기업	- 지식경제부고시(고시2002-24호, 2002.3.1) 첨단기술 해당업체 - 국가기술표준원의 신기술(NET) 및 신제품(NEP) 인증기업  - 특허보유(실용신안권, 의장권 포함)업체 <신설>  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</sup>																									
A1	창업기업	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고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조업체(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<별지 제5호 서식>한 경우)																									
A2	벤처기업	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의3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'벤처기업확인서'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제조업체																									
A3	혁신기업	<삭제>  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'신기술 인증'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'신기술인증서'를 제출한 기업  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른 '신제품 인증'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'신제품인증서'를 제출한 기업  - 「특허법」 제86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'특허증'  - 「실용신안법」 제20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'실용신안등록증'  - 「디자인보호법」 제89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'디자인등록증'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		개정안			비고
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</sup>	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</sup>	
A3	혁신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량기술기업, 기술개발시범기업, 첨단기술 중소기업 (정부 또는 유관기관 선정)</li> <li>- 기술평가인증서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(대출금원장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임을 명기하거나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&lt;별지 제6호 서식&gt;한 경우)</li> <li>- 스마트공장 추진단 등이 발급한 '스마트공장 구축 완료 증명서' 확인 기업</li> </ul> <p>&lt;신설&gt;</p>	A3	혁신기업	<p>&lt;삭제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술평가인증서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(대출원장 등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임을 명기한 경우)로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 &lt;별지 제6호 서식&gt;한 경우</li> <li>-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을 완료 후 스마트제조 혁신추진단 등에 최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하거나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제출한 기업</li> <li>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제13조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인증확인서를 제출한 기업</li> </ul>	- 지원대상 조정 및 근거법에 따른 제출서류 명시
A4	녹색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</li> <li>- 환경부의 「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」에 의거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</li> <li>- 국가기술표준원의 GR마크(우수재활용품 품질인증)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</li> <li>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 및 「녹색인증제 운영요령」 제4조에 해당하는 녹색인증(녹색기술인증, 녹색사업인증, 녹색전문기업확인)을 취득한 기업</li> <li>- 「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」제13조의 신·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취득한 기업</li> </ul>	A4	녹색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17조에 의거 '환경표지의 인증'을 받고 동 요령 제10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</li> <li>- &lt;삭제&gt;</li> <li>- 「우수재활용품 인증요령」제3조에 의거 '우수재활용품 인증'을 받고 동 요령 제10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</li> <li>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제32조에 의거 '녹색기술 적합성 인증' 및 '녹색사업 적합성 인증'을 받거나 '녹색전문기업 확인'을 받고 「녹색인증제 운영요령」 제29조에 따른 '녹색기술 인증서', '녹색사업 인증서', '녹색전문기업 확인서'를 발급받아 제출한 기업</li> <li>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13조 및 「산업표준화법」제15조에 의거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을 취득하고 「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</li> </ul>	- 지원대상 조정 및 근거법에 따른 제출서류 명시
A5	연구개발 우수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동차부품, 조선, 화학제품, 생명과학 관련업체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%이상인 기업</li> </ul>	<삭제>	<삭제>	<삭제>	- 지원대상에서 삭제

현행			개정안			비고
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</sup>	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</sup>	
A6	추천기업 <sup>2)</su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금융 수혜자격 및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업체</li> <li>-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</li> <li>- 금융기관이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</li> <li>- 울산광역시가 지정한 '울산스타기업'</li> </ul> <p>&lt;신설&gt;</p>	A6	추천기업	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울산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」에서 '울산지역스타기업'으로 선정된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발급한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</li> <li>-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제18조의2에 따른 '인재육성형 중소기업'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</li> </ul>	- 지원대상 추가·삭제 및 제출서류 명시
A8	지역전략 산업 영위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주력산업(친환경가솔린 자동차부품, 정밀화학, 조선기자재, 환경, 에너지부품)중 &lt;별첨&gt;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&lt;별지 제7호 서식&gt;한 경우</li> </ul>	A8	지역전략 산업 영위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주력산업(친환경가솔린 자동차부품, 정밀화학, 조선기자재, 환경, 에너지부품)중 &lt;별첨&gt;의 업종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</li> </ul>	- <별지 서식> 삭제 및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지원 명시
A9	전입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타 지역에서 울산본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이전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조업체(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&lt;별지 제8호 서식&gt;한 경우)</li> </ul>	A9	전입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울산광역시로 전입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를 지원</li> <li>1. 타 지역에서 울산광역시로 전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로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&lt;별지 제7호 서식&gt;한 경우</li> <li>2.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'국내복귀기업'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'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'를 제출한 기업</li> </ul>	- <별지 서식> 호 조정 및 '국내복귀기업'에 대한 지원근거 명시
A10	수출관련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장(중소벤처기업부 장관)이 지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</li> </ul>	<삭제>	<삭제>	<삭제>	- 지원대상에서 삭제

현행			개정안			비고
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</sup>	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</sup>	
A11	소재부품 생산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부품·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 및 제25조에 의거 부품·소재 전문기업 확인서를 받은 업체</li> <li>&lt;신설&gt;</li> <li>&lt;신설&gt;</li> <li>&lt;신설&gt;</li> </ul>	A11	소재부품 생산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의 시설자금을 지원</li> <li>1.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‘특화선도기업’으로 동법 제1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제출한 기업</li> <li>2.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‘전문기업’으로 동법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전문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</li> <li>3.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에 따른 ‘강소기업’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선정서를 제출한 기업</li> </ul>	- 근거법명 변경 사항 적용 및 지원 대상 추가·조정
A13	농림수산업 관련 기업	-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,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~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·농어업법인	A13	농림수산업 관련 기업 <sup>3)</sup>	- 농업(01), 임업(02) 및 어업(03)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	- 상시근로자 요건 삭제 및 문구수정
A14	명절 및 재해자금 등	- 명절, 계절적 자금수요, 재해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울산본부장이 특별지원하는 기업	A14	명절 및 재해자금 등	- 명절, 재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은행 울산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	- 문구 수정
A15	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및 기타지원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</li> <li>- 「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울산광역시가 인증한 예비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</li> <li>- (생략)</li> </ul>	A15	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및 기타지원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</li> <li>- 「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거 울산광역시가 지정한 ‘예비사회적기업’ 중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</li> <li>- (현행과 같음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거법 및 제출서류 명시</li> <li>- 울산광역시 소재 추가 및 문구수정</li> </ul>

현행			개정안			비고
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</sup>	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</sup>	- 울산광역시 소재 추가 및 문구수정
A16	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	-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<sup>3)</sup>  <()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> 1) 합성수지선 건조업(31112), 2)해운업(501~502), 3) 음식·숙박업(55~56, 다만 주점업<5621>은 제외), 4)도소매업(45~47), 5)여행업(752), 6)운수업(49, 51~52), 7)여가업(90~91, 다만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<9124>, 무도장 운영업<91291>은 제외)	A16	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	-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<sup>2)3)</sup>  1) 합성수지선 건조업(31112) 2) 해운업(501~502) 3) 음식·숙박업(55~56) 4) 도소매업(45~47) 5) 여행업(752) 6) 운수업(49, 51~52) 7) 여가업(90~91)	
주: 1) (생략) 2)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,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)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,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,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 <신설>			주: 1) (현행과 같음) <삭제>  2)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,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,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 3) ()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(KSIC, 제10차)			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-----	-------	-----

<별지 제5호 서식>

**창업 중소기업 확인서**  
(20   년   월   일)

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앞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은행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(점)장 (인)

아래 업체는 귀 본부의 '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'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임을 확인합니다.

점포명	업체명	대표자	사업자 등록번호	업종	업종코드	설립일자	비고
계	건						

주 : 1) 기준 제4조 제1항 1호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신청시 작성  
2)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조업

**(제외대상)**

- 위장창업 및 사업승계의 경우
-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체(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도박장 운영업, 미용·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,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)

작성담당자 직위 :           성명 :           (          )

<별지 제5호 서식>

**창업기업 확인서**  
(20   년   월   일)

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앞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은행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(점)장 (인)

아래 업체는 귀 본부의 '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'에서 정하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임을 확인합니다.

점포명	업체명	대표자	사업자 등록번호	업종	업종코드	설립일자	비고
계	건						

주 : 1) 제4조제1항제1호의 창업기업으로 신청시 작성  
2)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조업

**(제외대상)**

- 위장창업 및 사업승계의 경우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에서 정하는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
  - ※ ( )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 기준
  - 1. 일반유흥주점업(56211)
  - 2.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  - 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9)
  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작성담당자 직위 :           성명 :           (          )

- 문구 정비

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&lt;별지 제7호 서식&gt;</p> <p>(생략)</p>	<p align="center">&lt;삭제&gt;</p>	<p>- &lt;별지 제7호 서식&gt; 삭제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&lt;별지 제8호 서식&gt;</p> <p align="center"><b>전입기업 확인서</b> (20   년   월   일)</p> <p>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앞           은행           부(점)장 (인)</p> <p>아래 업체는 귀 본부 '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'에서 정하는 전입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31 947 1205 1493"> <thead> <tr> <th>거래 점포명</th> <th>업체명 (전입 전 소재지)</th> <th>대표자</th> <th>사업자 등록번호</th> <th>업종</th> <th>업종코드 (5자리)</th> <th>설립일자</th> <th>전입일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 <td align="center">계</td> <td align="center">건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) 타 지역에서 울산본부 관내로 이전한 기업 중 이전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조업체</p> <p>작성담당자 직위 :           성명 :           (            )</p>	거래 점포명	업체명 (전입 전 소재지)	대표자	사업자 등록번호	업종	업종코드 (5자리)	설립일자	전입일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계	건							<p>&lt;별지 제7호 서식&gt;</p> <p align="center"><b>전입기업 확인서</b> (20   년   월   일)</p> <p>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앞           은행           부(점)장 (인)</p> <p>아래 업체는 귀 본부 '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'에서 정하는 전입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246 947 2220 1493"> <thead> <tr> <th>거래 점포명</th> <th>업체명 (전입 전 소재지)</th> <th>대표자</th> <th>사업자 등록번호</th> <th>업종</th> <th>업종코드 (5자리)</th> <th>설립일자</th> <th>전입일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 <td align="center">계</td> <td align="center">건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: 타 지역에서 울산광역시로 전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조업체</p> <p>작성담당자 직위 :           성명 :           (            )</p>	거래 점포명	업체명 (전입 전 소재지)	대표자	사업자 등록번호	업종	업종코드 (5자리)	설립일자	전입일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계	건							<p>- 호 조정 및 문구 수정</p>
거래 점포명	업체명 (전입 전 소재지)	대표자	사업자 등록번호	업종	업종코드 (5자리)	설립일자	전입일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거래 점포명	업체명 (전입 전 소재지)	대표자	사업자 등록번호	업종	업종코드 (5자리)	설립일자	전입일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&lt;별지 제9~11호 서식&gt;</p> <p>(생략)</p>	<p align="center">&lt;삭제&gt;</p>	<p>- &lt;별지 제9~11호&gt; 서식 삭제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